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력채용시 부처 업무 특성이나 외부 채용환경에 맞게 자격증·경력 등의 자격요건을 조정하고, 부처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충원이 어려운 임기제 의사 채용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연봉 책정범위를 확대하고, 재난 대응 및 복구 시 채용 후보자를 정원 외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부처의 특수성에 맞는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실현하고 성과를 제고하고자 현행 공무원 인사 특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채용 요건 설정 자율성 확대 (안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부처별 업무 특성이나 민간의 인력 공급 상황 등 급변하는 채용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경력채용 시 임용예정계급의 상위계급 또는 하위계급의 자격증을 적용하거나, 필요한 근무경력을 3년 범위 내에서 줄이거나, 학위 취득 후 필요한 소요경력연수를 2년 범위에서

조정하는 등 부처가 응시요건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나. 4급 이상 경제 직위군 채용(안 제10조)

그간 특례운영기관에 한해 경력채용시 동일한 직위들의 경우 직위군으로 묶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던 것을 5급 이하는 전 부처로 확대하여 허용하고, 직무 책임도가 높은 4급 이상(4급 상당 연구·지도직 포함)에 대해서만 특례를 유지하도록 함

다. 재난 대응 등을 위한 채용후보자 정원 외 임용(안 제20조)

재난 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해 신속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채용후보자를 즉시 정원 외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직제상 정원 파견 협의 폐지(현행 제14조 삭제)

그간 특례운영기관에 한해 파견 받는 기관의 직제에 소속 공무원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직제상 정원 파견)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면제하고, 파견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허용해왔던 것을 특례에서 폐지하고 전 부처에 확대하여 허용하도록 함

마. 고위공무원단 전담 직무대리 협의 폐지(현행 제18조 삭제)

그간 특례운영기관에 한해 2개월 미만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전담 직무대리 지정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면제해왔던 것을 특례에서 폐지하고 전 부처에 확대하여 허용하도록 함

바. 승진소요최저연수 적용 자율화 (안 제12조)

부처의 직위 신설·증원으로 결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성과주의 강화를 위해 승진임용이 필요함에도 승진소요최저연수 요건이 걸림돌로

작용했던 경우가 있었으나 부처가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유연한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사. 의사 신규채용 연봉 자율책정범위 확대 (안 제21조)

교정시설·군병원 등 특수기관은 의사에 대한 채용수요는 높으나 민간대비 낮은 처우수준 등으로 채용에 어려운 상황으로, 원활한 채용을 위해 부처가 임기제 의사 신규 채용시 기준연봉액의 200% 내에서 연봉을 자율책정할 수 있도록 함

아. 계획된 연가 및 유연근무 자기결재 제도 도입(안 제22조)

‘연가·유연근무 눈치 보기’ 등 경직된 공직문화에 대한 개선 요구 증가에 따라 모든 복무에 대해 부서장 사전 결재를 득하던 것을 사전에 계획된 1일 이내의 (반일)연가 및 1시간 이내의 유연근무에 한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 제도를 도입함

자. 적극행정위원회의 활용근거 명확화 (안 제23조)

적재적소 적시 인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을 위해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인사혁신처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9. 14. ~ 10. 24.)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비대상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를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상위계급 또는 하위계급의 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고,”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용예정직급의 자격증을 하위계급 자격증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없다.

제9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 및 별표 9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에 규정된 경력기준 중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경력기준을 줄일 수 있다.

1. 5급 이상: 3년(관리자 경력은 3년 이상)

2. 6급: 1년

③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10호,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공무원임용령」 별표 4에 규정된 경력기준에 대해서 2년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선발된”을 “선발된 4급 이상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직무가 동일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다음 각 호의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중 제3호나목을 제외한 연구관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중 제3호나목을 제외한 지도관

제12조제1항 중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

거나 줄일”을 “그 범위내에서 줄이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1. 조직의 신설, 정원의 증원 등으로 결원이 다수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2. 우수 인력 육성 및 성과주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④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고려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해당 계급의 근무성적평가 점수 산정 대상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계급에서 평가받은 최근 1회 이상의 근무성적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난 대응 등을 위한 임용 추천 방법의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 대응·복구를 위한 직접적이고 필수적인 업무 수행시 긴급하게 임용이 필요한 경우 추천된 7급 및 9급 공무원 채용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용할 수 있다.

제21조(신규채용 시 연봉 책정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위에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를 일반임기제(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또는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제36조제3항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200퍼센트 이내의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1. 교정시설·병원 및 이에 준하는 시설에서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위
2. 업무의 특수성 및 근무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책정하는 연봉 수준으로는 채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직위

제22조(연가·유연근무 사용방식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제3항,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복무제도를 기관장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용일로부터 7일 이전에 계획하여 신청한 1일 이내의 연가 및 반일연가
2. 사용일로부터 2일 이전에 신청한 1시간 이내의 시차출퇴근제형 유연근무

제23조(적극행정위원회의 활용) 적재적소 적시 인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혁신처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제2항, 별표 7 및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u>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u> 3년의 범위에서 경력기준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단서 신설>	제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① ----- ----- ----- ----- ----- ----- ----- ----- ----- ----- <u>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상위계급 또는 하위계급의 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고,</u> ----- ----- ----- ----- ----- 다만, <u>임용예정직급의 자격증을 하위계급 자격증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없다.</u>
1. 2. (생략) <신설>	1. 2. (현행과 같음) ②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

<신 설>

제1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

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 및 별표 9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에 규정된 경력기준 중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경력기준을 줄일 수 있다.

1. 5급 이상: 3년(관리자 경력은 3년 이상)

2. 6급: 1년

③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10호,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공무원임용령」 별표 4에 규정된 경력기준에 대해서 2년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제1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

협등 중 직무가 동일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신 설>

----- 선발된 4급 이상의 -----

-----.

②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직무가 동일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다음 각 호의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3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중 제3호나목을 제외한 연구

제12조(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31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승진소요최저
 연수를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
 거나 줄일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신 설>

관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의2 중 제3호나목을 제외한
지도관

제12조(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
 1항-----
 ---- 그 범위내에서 줄이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릴 -----
 -----.

1. 조직의 신설, 정원의 증원 등
 으로 결원이 다수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2. 우수 인력 육성 및 성과주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
 속 장관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
 에도 불구하고 조정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고려하여 승진후보
 자명부에 반영하는 해당 계급의
 근무성적평가 점수 산정 대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승진임용의 방법은 그 변경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파견근무 기간 및 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인사특례운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파견하는 경우로서 파견 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년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계급에서 평가받은 최근 1회 이상의 근무성적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 제4항-----

-----.

<삭 제>

을 초과하여 파견할 수 있고, 총 파견기간 5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 또는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전담직무대리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직무대리규정」 제6조제5항제2호 전단에 해당되어 직무대리자가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補)하는 직위의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호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그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②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

<삭 제>

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20조(재난 대응 등을 위한 임용 추천 방법의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 대응·복구를 위한 직접적이고 필수적인 업무 수행시 긴급하게 임용이 필요한 경우 추천된 7급 및 9급 공무원 채용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용할 수 있다.

제21조(신규채용 시 연봉 책정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위에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 소지자를 일반임기제(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또는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신 설>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제36조제3항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200퍼센트 이내의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1. 교정시설·병원 및 이에 준하는 시설에서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위

2. 업무의 특수성 및 근무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책정하는 연봉 수준으로는 채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직위

제22조(연가·유연근무 사용방식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제3항,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복무제도를 기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용일로부터 7일 이전에 계획하여 신청한 1일 이내의 연

<u><신 설></u>	<u>가 및 반일연가</u> <u>2. 사용일로부터 2일 이전에 신</u> <u>청한 1시간 이내의 시차출퇴</u> <u>근제형 유연근무</u> <u>제23조(적극행정위원회의 활용)</u> <u>적재적소 적시 인사 및 불합리</u> <u>한 규제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u> <u>경우 인사혁신처장은 법령이 없</u> <u>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사</u> <u>항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0조</u> <u>의2제2항에 따른 인사혁신처 적</u> <u>극행정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u> <u>구할 수 있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8319